

충청북도 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 일자 : 1993년 11월 17일
- 회부 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다. 상정 일자 : 제97회 정기회

- 제 2 차 농림수산위원회 (1993. 12. 7) 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수산국장 정 태 현)

가. 제안 이유 : 시대 및 여건의 변화에 따른 종축장설치 목적 및 업무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현 위치를 변경코저 함

나. 주요 골자

- 축산관련 기술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
 - 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
 -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 연구
 - 기타 가축사육 및 생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행정구역의 변경(청주시로 편입)에 따라 현 위치를 개정함
 -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에서 청주시 주중동으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허 희)

- 축산관련 기술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축장의 업무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

현 종축장의 위치가 청주시로의 편입에 따른 위치를 개정코저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 슴 "

5. 검토요지 : " 없 슴 "

6. 심사결과 : " 원안 가결 "

7. 소수의견요지 : " 없 슴 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 없 슴 "

9. 별첨

- 충청북도 종축장 조례중 개정 조례 (안) 1부
- 신규조문 대비표 1부. "끝"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 1 조 (설치) <u>우량종축 및 종금과 사료 종자의 생산과 가축사육기술 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 종축장 (이하 "종축장" 이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제 2 조 (위치) <u>종축장은 청원군 복일면 주중리 산 147번지에 둔다.</u></p> <p>제 3 조 (업무) <u>종축장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우량종축 종금의 생산</u> 2. <u>우량사료 종자의 생산</u> 3. <u>가축사육 기술 보급</u> 4. <u>기타 가축사육 및 사료종자 생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 	<p>제 1 조 (설치) <u>가축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과 축산·사료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 보급을 위하여</u></p> <p>제 2 조 (위치) <u>청주시 주중동</u></p> <p>제 3 조 (업무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</u> 2. <u>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</u> 4. <u>기타 가축사육 및 생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